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0가합57882 판결 [보증금이행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61,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피고들이 D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용일 : 2017년 4월 11일

- 차용액 : 일금 이억이천만원정 (₩220,000,000)

1. 위 금액을 채무자('D'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채권자('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위 금액은 채권자가 남양주시 E에 있는 채권자의 아파트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한 금원이며, 위 금원에 대해 완납 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채무승계가 되는 시점까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피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확약한다.

- 원금변제기 : 2019. 4. 10.

8. 채무자가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는 일체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9.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 2017. 4. 12. 08:04:08 H은행의 위 대출금 170,000,000원이, 18:08:39 I의 위 대출금 48,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그 후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17. 4. 12. 18:41:05 D IBK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계좌로 47,000,000원이, G의 계좌로 100,000,000원, 70,000,000원이 순차 출금되었고, 같은 날 20:40:10 G의 계좌에서 D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2. H은행, I로부터 170,000,000원, 48,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D에게 그 중 21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D의 위 차용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잔존 차용금채무 115,061,567원(= 이 사건 대여금 217,000,000원 - 변제된 금액 101,938,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남편 J이 피고들과 함께 D를 운영하는 관계에서 D에 투자한 돈인데, J이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에 따라 2017. 4. 12.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70,000,000원을, I로부터 대출받은 48,000,000원 중 47,000,000원을 각 D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이체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에게 217,000,000원을

대여1)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부분

가)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2016. 9. 22. D를 설립하여2) K, L과 같은 술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하였는데, D의 가맹점 확대나 가맹점 운영이 순조롭지 않자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의 운영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과 J의 관계는 피고들이 2016. 12.경 J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피고들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J으로부터 L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2) 2017. 4. 12.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되기 직전 D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은 1,917,846원이었는데 이날 이 사건 대여금 47,000,000원, 170,000,000원이 각 입금된 후 직원 급여나 각종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 출금되어 다음날 위 계좌의 잔액은 다시 658,502원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역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각종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대여가 피고들 등과 J 사이의 이전 금전거래와 다르게 대여가 아닌 투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J이 피고들과 함께 D를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4. 1.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J은 2017. 3. 13. G를 설립하고 산후조리원 실내장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은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2017. 4. 13. G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바, J이나 원고가 D나 G를 통해 피고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J이나 원고가 D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를 투자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J과 피고들 또는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본 손실 위험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등 투자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는바, J이나 원고가 D의 운영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은 변제기를 2년 뒤인 2019. 4. 20.로 정하면서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위 금액은 채권자가 남양주시 E에 있는 채권자의 아파트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한 금원이며, 위 금원에 대해 완납 또는 G로 채무승계가 되는 시점까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약속한다'라고 정하여, 차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의 출처인 대출금의 원리금을 D 및 피고들로 하여금 대신 갚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는 일체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라고 정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환을 분명히 보장하게 하였다.

(5) 실제로 D는 2017. 4.부터 2018. 5.까지 매달 원고의 H은행 계좌에 H은행 대출금 이자 상당액인 약 759,000원과 I 대출금 이자 상당액인 약 1,198,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위 계좌에서 위 각 대출금의 이자가 출금되었다. 만약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금이었다면 D 및 피고들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정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D가 굳이 위 차용증에서 정한 바대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6) 피고 C은 2020. 1. 30. 'J의 아들 N에게 D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3개월 안에 다 갚겠다고 말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910, 3199(병합)}, 2020. 8. 26.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20노265 판결), 2020. 10.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2541 판결). 이 사건 대여도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D가 이자를 대납해주고 원리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위 범죄사실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인다.

2) 피고 C의 주장 부분

한편, 피고 C은, J이 차용증과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요청하면서 '요새 연대보증이 어딤냐? 그냥 구색을 갖추는 것이지. 그럼 대출금은 D로 안 넣고 G에 집사람 이름으로 출자금으로 잡아서 입금시킬게. 이걸 G에서 D로 보낼 때 G가 빌려주는 것으로 잡으면 되잖아'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 중 G의 계좌를 통해 D에게 입금된 170,000,000원은 G에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G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원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금원이 직접 이체되는 것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H은행 계좌에서 G 계좌로 이체된 170,000,000원이 불과 2시간 뒤 G의 계좌에서 그대로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G가 D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이 D의 위 차용금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17,000,000원에서 원고가 D로부터 101,938,43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115,061,56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조상은, 판사 이슬아

1)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이

2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들은 2016. 9. 22. 피고 C의 전 여자친구인 M을 대표이사로 하여 D를 설립하였다.